번호			건축물 해체 공법의 종류와 해체계획서 포함 내용
5			2026년 제138회 제2교시 3번
			1. 개요
			-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해체계획서 제출이
			필수임(법 제30조)
			- 해체공법은 파쇄 원리에 따라 기계적, 절단, 전도, 발파, 화학적(팽창제)
			공법으로 구분함
			- 선정 공법은 해체계획서의 작업순서, 구조안전계획, 안전관리대책에 직접
			반영됨
			2. 해체공법의 종류와 특성
			- 압쇄공법: 압쇄기로 부재 파쇄, 저소음 저진동, 분진 살수 필요
			- 브레이커공법: 유압 브레이커 타격, 기초 등 두꺼운 부재에 적용, 소음 진동 큼
			- 절단공법: 와이어쏘 등으로 절단 후 블록 양중, 정밀 해체, 공기 비용 증가
			- 전도공법: 하부 절단 후 계획 방향으로 전도, 전도 방향과 비산거리 관리
			- 발파공법: 화약으로 지지부 파괴, 공기 단축, 진동 비산 관리 필요
			- 팽창제공법: 천공 후 비폭성 팽창제 주입, 무소음 무진동, 시간 소요
			3. 공법 선정 시 검토사항
			- 구조 형식, 부재 단면, 노후도와 구조 안전성
			- 인접 건물 이격거리, 도로와 보행자 통행, 지하 매설물
			- 소음, 진동, 분진의 허용 수준과 민원 가능성
			- 장비 탑재 시 슬래브 하중 검토와 보강 계획
			- 석면 함유 여부, 가스시설 안전조치 여부 사전 확인

번호			4. 해체계획서 포함 내용(시행규칙 제12조 제1항)
5			-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 개요
			- 영향을 받는 건축설비의 이동, 철거 및 보호
			- 작업순서,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
			- 화재 방지, 공해 방지, 교통안전, 안전통로 확보, 낙하 방지 등 안전관리대책
			- 해체물 처리계획
			- 해체 후 부지정리, 인근 환경 보수 및 보상
			5. 작성 주체와 처리 절차
			- 허가 대상: 건축사 또는 기술사(건축구조, 건축시공, 건설안전)가 작성 및
			서명날인
			- 신고 대상: 같은 자격자가 검토 및 서명날인
			- 특수구조, 10톤 이상 장비 탑재, 폭파 해체: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
			- 허가 대상은 착공신고, 현장점검, 감리, 30일 이내 완료신고 순으로 진행
			6. 현장 운영 시 유의사항
			- 해체공법, 작업순서 등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(법 제30조의3)
			- 해체작업자는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고 안전관리대책 수행(법 제32조의2)
			- 계획서대로 해체가 어렵고 붕괴 우려 시 구조보강계획
			작성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4조 제2항)
			- 전도, 발파 전 작업 반경 내 인원 확인과 출입 통제(같은 규칙 제384조 제1항)